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외교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그 관할구역의 사건·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(3등급 또는 4등급 16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 00000호, 2025. 0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1. 6. ~ 11. 1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외교부령 제 호

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1,490”을 “1,506”으로 하고, 외무공무원 계 “1,490”을 “1,506”으로 하며,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“249”를 “265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3]

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(제35조제2항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	계			<u>1,490</u>	<u>1,506</u>	+16	
외	무	공무원	계	<u>1,490</u>	<u>1,506</u>	+16	
		.		.	.		
		.		.	.		
3	등	급	또는	4	등	급	
영	사	직	공무원	<u>249</u>	<u>265</u>	+16	
		.		.	.		
		.		.	.		